

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

심사구분 : 제 935회 예비심사

안전번호 : 제 2024-151호

안 건 명 :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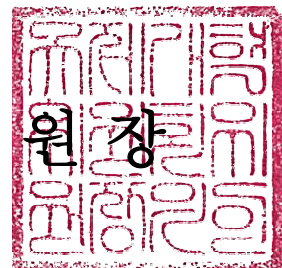
위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·의결 하
였음.

붙 임 :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규제심사 결과

2024. 04. 29.

※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·개정안에 대한 것으로, 이후 입법과정에서
내용이 변경되는 경우,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
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.

규 제 개 혁 위 원 회 위 원 장



<붙임>

「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」 심사 결과

안전 개요	심사 결과
1. 건축물의 존치 요건(신설) ○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시설물을 존치할 경우에 존치요건과 존치부담금 산정 방식을 규정하여 존치 요건에 부합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시설물을 존치할 수 있도록 하며, 존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을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, 기존의 토지소유주(시설물 존치에 따른 해당 토지)에게 부과하여야할 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음 ○ 도시개발업무지침은 시행령의 존치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으로, 시행령의 표현 중 “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”, “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” 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○ 이에 더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시설물 존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‘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’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, 그 구성요건을 규정	< 비중요 규제 >